

제145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2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면
3.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면
4.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면
5.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면
6.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면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4면
7.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결과보고서	16면
8.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가.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7면
나.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2면
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8면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11. 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0월 7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0월 7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4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4.10.15) 상정 · 의결(보류)

제14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4. 11. 5) 상정 · 의결(수정)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황 의 진)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2004.1.29)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자격을 갖춘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 부여 (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정함 (안 제4조)
- 주민투표의 실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함. (안 제5조)
-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토록 요청하는 기간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함. (안 제7조)
-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실시 청구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함.(안 제11조)
- 주민투표 청구요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구성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안 제12조)
-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등 제한사항 (안 제15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박 성 열)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 조 기 태 위 원 의 수 정 안 동 의

6. 修 正 案 의 要 旨

○ 수 정 이 유

-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외국인을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조례에 명시함.

○ 수 정 안 본 문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3조 (주민투표권) ①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7. 審 査 結 果 : 수 정 가 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주민투표권) ①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 한다)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 (주민투표권) ①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주민투표권이 있다.</p> <p>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p>